#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특정업무직수영장 안전요원 및 기간제 근로지(시설정비원) 공개채용

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믿음과 소통을 바탕으로 성취하는 신(信)통(通)한(汗) 인재를 모집합니다.

2024년 4월 19일

##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

#### 1. 채용 개요

모집분야	채용인원	채용형태	임 <del>용</del> 예정일자	근무지
수영장	1명	특정업무직		공단 고용개발원
안전요원	1 6	(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)	2024542786	※ 경기도 성남시
시설정비원	1명	기간제 근로자(육아휴직 대체)	2024.5.13.(월)	분당구 구미로
(3조3교대)	10	(2024.5.13.~2025.1.24.)		173번길 59

### 2. 지원 자격요건

#### 응시자격

<공통 자격사항>

- 연령: 「특정업무직 근로자 관리규칙」에 따른 정년에 미달하는 자(만 60세 미만인 자)
-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(근무 불가능 시 합격이 취소됨)
- 학력 제한 없음
- <공통 결격사유>
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및 공단「인사규정」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<수영장 안전요원 자격사항>
-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자\*
  - \*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[별표 6]의 안전·위생 기준에 따른 수상안전요원

<시설정비워 자격사항>

- 3조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(단속적 근로자)
- 소방/건축/기계설비/전기 관련분야 경력 유경험자 또는 소방/건축/기계설비/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

# 3. 근무조건

## □ 근무조건 및 수행업무

구분	주요내용						
, _	• 근무시간 및 근로형태						
	직렬	근로형태	년태 근무시간 (근로시간)		ll시간	월근로시간 (야간근로)	
	수영장 안전요원	주간 근무	09:00-18:00		)-13:00 니간)	209	
	시설정비원 (기간제 근로자)	3조3교대	09:00-18:00 09:00-09:00 휴무 (23시간)	12:00 18:00 24:00 06:00	)-13:00 )-13:30 )-19:30 )-05:00 )-07:00 시간)	233 (30)	
	※「특정업무직(운영자 일부 변동될 수 있	•	리규칙」에 따라 기	관 운영	상 근무시?	간 및 휴게시간은	
	•보수: 특정업무	무직 해당 직肓		-	지급		
근무조건	직렬	월 급여	1등급 1단계 직무급	<b> </b>	등식보조비	교통보조비	
	수영장 안전요원	2,290,850원	2,060,850 원	월 1	40,000원	90,000원	
	시설정비원	2,290,850원	2,290,850원 2,060,850		40,000원	90,000원	
	※특정업무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및 금액은 매회계연도별로 공단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지급하며, 시설정비원 급여는 월 209시간 임금으로 근로시간에 비례 하여 직무급을 결정함(야간수당 별도 지급) • 고용형태 및 직급						
	직렬		고용형태		7	약기간	
	수영장 안전요	원	특정업무직*			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	
	시설정비원	기간제 :	기간제 근로자(육아휴직 대체)			2024.5.13.~2025.1.24.	
	*특정업무직 근로자는 3개월 수습 근무 후 수습근무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여부 결정						
수영장 안전요원 수행업무	• 고용개발원 내 수영장 운영 및 수영장 안전요원 관련 업무 수행 • 기타 고용개발원 내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 수행						
시설정비원 수행업무	• 고용개발원 청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• 기타 고용개발원 내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 수행						

# 4. 전형절차 및 전형일정

## □ 전형절차 개요

서류접수		1차전형	2차전형
_	<b>-</b> /	서류심사	면접시험

## □ 모집분야별 전형절차

ㅁ킯ㅂ사	전형단계 및 합격배수			
모집분야	서류접수	1. 서류심사	2. 면접시험	
수영장 안전요원, 시설정비원	이메일 접수	서류(5배수)	전 모집분야 1배수	

### □ 전형절차별 세부내용

전형단계		세부내용
		○ 공고 및 접수기간: 2024.4.19.(금) ~ 4.26.(금) 10:00
서류접수	_	○ 제출 서류: 입시지원서류(응시원서, 경력 및 경험기술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)(필수), 우대기점 증빙서류(장애인증명 서,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)(해당자에 한함)
		○ 접수 방법 (유선 전화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: 031-728-7225) ① 이메일 접수: cmk@kead.or.kr(채용 담당자) ※이메일 접수 시 제목을' <b>직렬_응시원서_성명</b> '으로 기재
		※접수 마감일 4.26.(금) 10:00:00까지 도착분만 접수 인정함.
		○ 수영장 안전요원의 경우 응시원서 '자격사항', 시설정비원의 경우 '자격사항'또는 '경력사항'에 반드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시 자격요건 미충족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1차전형	서류심사	<ul> <li>○ 대상자: 특정업무직(수영장 안전요원), 시설정비원(기간제 근로 자)</li> <li>○ 서류심사: 2024.4.29.(월) 실시 예정</li> <li>○ 심사내용: 경력 및 경험기술서, 자기소개서 평가</li> </ul>

		계	경력 및 경험기술서	자기소개	서	가산점
		100점	40점	60점		배인, 취업지원대상자 내용은 우대사항 참조)
		○ 선발배수: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				
		<ul><li>합격지</li></ul>	발표 및 면접	시험 일정 안	H: 2024.4.2	9.(월) 예정(개별통보)
		*수영장 안전요원, 시설정비원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요청할 예정이며(4.29.(월)~4.30.(화) 중), 증빙서류 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오니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○ 우대가점(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)은 심사위원별 심사점수의 평균 이 6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.				
		<ul><li>○ 면접/</li></ul>	기험: <u>2024.5.</u> 2	.(목) 예정		
	면접시험	○ 전형방법: 직무능력기반 면접				
		○ 평가항목				
		평가	항목	배점	평가항	목 배점
		고객	중심	20	전문성	20
9차저형		의사	소통	15	실행력	15
27160		문제해	결능력	15	책임의	식 15
		○ 선발배수: 모집분야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				
		○ 심사점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, 동점자에 대해서는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1차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.				
○ 모집분야 최종합격자 1배수 선발(1배수 둘 수 있음)					발(1배수	범위 내 예비합격자를
		○ 합격자 발표 예정일: 2024.5.7.(화) 15:00 자 <b>*합격자 개별 연락처를 통해 합격 통보 예정</b>				
	합격자					정
	발표	○ 합격자 임용 예정일: <b>2024.5.13.(월)</b>				
			]은 기관 운영		_	수 있음

■ 상기 전형절차 일정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합니다.

### 5. 우대사항 증빙서류 제출

구분	우대내용	유의사항
장애인	전형단계별 각 과목별 만점의 5%(중 증장애인은 10%) 가산점 부여	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은 「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4조 에 의함
취업지원대상자	전형단계별 각 과목별 만점의 5~10% 가산점 부여	가산점 적용 비율을 반드시 국가보훈 처에 확인 후 입사지원 시 관련사항 기재

-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서의 장애항목 또는 보훈항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우대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절차에서 해당 우대가점을 적용 하지 않으므로 유의바랍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'취업지원 대상자증명', 장애인의 경우 '장애인 증명서', '중증장애인 확인서'의 서류만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**장애인(채용전형 단계별 만점의 5%, 10% 가점 부여)** ※ 중경증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, 제4조에 따름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「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,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,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,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(채용전형 단계별 만점의 5%, 10% 가점 부여)
- 우대항목 중복시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.

# 6. 응시자격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

구분	제출서류
작성방법	○ 작성: 응시원서 내 [경력사항] 기재 또는 [자격사항] 기재란 작성
제출자료	수영장 안전요원 ○ 수상인명구조 자격*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*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[별표 6] 안전·위생 기준에 따른 수상안전요원 (가)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징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(나)「수상에서의 수색・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(다)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(라)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
	*경력 확인을 위해 <u>반드시 업무 내용이 기재된</u>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
제출방법	○ 2024.4.29.(월)~4.30.(화) 중 대상자에게 유선연락해 서류 송부(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시 채용 전형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유의사항	<ul><li>○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(마스킹처리)</li><li>○ 제출한 서류는 자격요건 확인에만 활용되며,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</li></ul>

### 7. 유의사항 등 기타사항

-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접수 마감일 10:00까지 지원해야 하며 접수마감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며, 접수 후에는 담당자에게 유선연락(031-728-7225)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 등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자 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며, 필요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경우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항목(교육사항, 자격사항, 경력 및 경험사항)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각 전형절차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임용 예정일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합니다.
- 블라인드 채용정책에 따라,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·간접적으로 생년월일(연령), 성별, 학교명, 학력, 전공, 학점, 외국어 점수, 추천인 등 직무능력과 관련되지 않고 불필요한 선입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라며, 해당 사항이 발견된 경우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  - \* 고용개발원 운영관리부 채용문의 031-728-7225 (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)

#### 8. 결격사유

#### <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>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 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## <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>
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,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8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9.6.4.>